

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엄재창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정이유

-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심의·조정기구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고, 투명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,
-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민원법 시행령 취지에 맞는 법규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-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2조, 제4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(안 제5조)
- 위원 해촉 및 위원장 직무(안 제6조, 제7조)
- 안전심의 처리(안 제10조)
- 민원조정실무심의회 운영(안 제12조)

4. 검토의견

금번 제정조례안은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37조에 따라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심의·조정기구인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제고하고, 민원법 시행령 취지에 맞는 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주요내용은

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,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,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항을,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, 안 제10조에서는 안건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2조에서는 민원조정실 무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금번 제정조례안은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. 끝.